## <u>"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"</u> 공동주최를 위한 업무 협약서

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은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 국 제심포지엄 및 영화상영 프로그램(이하 평양전)의 공동주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약은 평양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 조 (사업개요)

1. 사업명: (국문)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

(영문)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17:

Pyongyang

- 2. 개최 기간 : 2017.11.1.~2017.11.3.
- 3. 장소 :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, 영화관
- 4. 공동주최 :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, 서울디자인재단(서울시 위임)

제 3 조 (장소제공)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제2조의 사업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속시설인 영화관과 멀티프로젝트홀을 무상으로 제공한다.

- 1. 멀티프로제트홀: 2017.10.31.~2017.11.2.
- 2. 영화관(MMCA필름앤비디오): 2017.11.2.~ 2017.11.3.

제 4 조 (기획 및 운영) 서울디자인재단은 제2조의 사업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, 홍보, 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며 홍보에 있어서 쌍방의 공동주최 임을 반드시 명시한다. 제 5 조 (예산) 서울디자인재단은 제2조의 사업 관련된 일체의 비용(상영료, 운송료, 장비대여비, 강연자 초청비 일체, 통번역비, 홍보비용 포함)을 담당한다.

제 6 조 (업무 분담)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은 상호 협력 아래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.

	내용	비고
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	장소제공에 대한 감독 및 협조	
	영화관 상영 기술지원	
서울디자인재단	심포지엄 및 영화상영 기획 및 운영	
	필요시 외부장비 설치 및 운영	
	현장 홍보 및 진행인력 관리	
	홍보물 제작 및 배포	

제 7 조 (시설물 사용) 서울디자인재단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시설물 이용 시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,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상호 협의 후 진행하 며, 분실 및 파손 시 원상복구의 원칙에 따른다.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시 설물 이용에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및 감독한다.

제 8 조 (장비의 설치 및 철수) 서울디자인재단은 평양전 관련 장비 및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미리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며,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철거한

다.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.

제 9 조 (티켓) ① 평양 영화상영 프로그램 및 국제심포지엄 입장을 위한 티켓 서비스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담당한다.

제 10 조 (협약의 변경 및 연장) ① 본 협약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서울디자인 재단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본 협약서에 우선한다. ②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제 11 조 (분쟁해결)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 쌍방이 협상, 조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해결이 안 될 경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12 조 (신의성실 및 상호보조) 쌍방은 신의를 가지고 상호 보조하면서,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 13 조 (비밀유지)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협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제 14 조 (제반 업무 연락) 본 협정과 관련된 제반 주요 업무 연락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되,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 할 경우는 공식문서를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다.

제 15 조 (협약의 해지)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상호간에 발생할 경우,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서로 상대방 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 16 조 (기타사항) 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.

본 협약서는 아래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은 서명된 계약서 2부를 각 1부씩 보관하다.

## 2017년 6월 XX일

상 호 :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상 호 : 서울디자인재단

주 소: 110-200 서울시 종로구 주 소: (03098) 서울시 종로구

삼청로 30(소격동) 율곡로 283

대 표: 바르토메우 마리 (서명) 대 표: 이 근 (서명)

사업자 등록번호 : 138-83-00313 사업자 등록번호 : 120-82-09000